<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프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거나 수입될 전망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샴프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11. 선고 2013허709 판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을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다른 각호의 상표들과 구분하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들 상표들에 대하여는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다른 각호의 경우들과 달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침해소송에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입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들이 특허청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그 상표들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침해소송에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7나2011(병합) 판결>

위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상표권의 소멸 원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금양물산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